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23.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125호)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남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5조(실태조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강가정지원법」 제5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4. 13. ~ 2023. 05. 03.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개정안은 성북구 1인가구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제3항은 1인 가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1인 가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연령, 성별, 지역 및 정책수요 등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등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과 지원계획 설계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은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원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1인 가구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들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23.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126호)
- 나. 회부일자: 2023. 5. 2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남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우리구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성북구 보훈회관의 위탁기간 만료일(23.6.30)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동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 대상시설
 - 시설명 : 성북구 보훈회관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0
 - 토지 992㎡, 건물 1,215㎡(지하1층/지상3층)
- 위탁기간 : 2023. 7. 1. ~ 2026. 6. 30.(3년)

- 위탁방법 :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의결
- 위탁사무 :
 -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구 “보훈회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3.06.30.자로 성북구 “보훈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로 구성된 현 수탁체인 보훈회관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임. 위탁대상 현황은 다음과 같음.

<성북구 보훈회관 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소요예산	위탁기간	운영주체	운영조직
성북구 보훈회관	- 위치 : 성북구 화랑로 130 - 규모 : 토지 992㎡, 건물 1,215㎡ (지하1층/지상3층)	213,417천원 (구비)	2021.7.1. ~ 2023.6.30.	성북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대표 최백순)	총 4명 - 관장 1 - 직원 3

<시설현황>

구 분	면 적(m ²)	사용면적
계	1,215.59	666.37
3층	244.75	대강당
2층	307.22	사무실 6개 - 상이군경, 미망인회,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1층	259.67	사무실 4개 - 관장실,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 고엽제
지층	403.95	편의시설 3개 - 체력단련실, 목욕탕, 탈의실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¹⁾에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국가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²⁾에서는 입주 자격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특수성 및 입주단체의 자율성 보장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입주 보훈단체 상호간 협의를 통해 관리 운영됨이 타당하다 사료됨.
- 또한 보훈회관은 개관(2007. 8. 13.)부터 현재까지 보훈회관 운영 협의회에서 운영 목적에 맞게 다년간 운영해 왔으며, 그간의 업무 수행 경험과 관리의 연속성을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재계약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입주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보훈단체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광복회	상 이 군경회	유족회	미망 인회	무공 수훈	특수 임무	고엽제 전우회	6.25 참전	베트남 참전
지회장	9	백태규	양승훈	고동진	최백순	차말근	김정환	이철성	이영우	이재성
회원수	5,376	81	970	544	453	807	23	327	607	1,564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국가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 2)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위탁기간은 보훈회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민간위탁 조례」 제10조³⁾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사료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사무의 재계약 추진은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종료 시한(2023.6.30.)을 앞두고 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 및 부결이 될 경우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적기성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23.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127호)
- 나. 회부일자: 2023. 5. 2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남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세대통합형 어울림 공간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정릉1동사람들 협동조합」과의 위탁계약이 2023.12.31. 종료됨에 따라,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8가길 6

- 규 모 : 대지 271㎡, 연면적 233.53㎡(지상 2~3층)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의결
- 위탁사무 :
 - 정릉1동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3.12.31.자로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3년간(2024. 1. 1. ~ 2026. 12. 31.)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임. 위탁대상 운영현황 다음과 같음.

<정릉1동커뮤니티센터 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소요예산	위탁기간	운영주체	운영조직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 위치 : 성북구 정릉로38가길 6 - 규모 : 대지 271㎡ 연면적 233.53㎡ (지상 2~3층)	71,945천원 (구비)	2021.1.1. ~ 2023.12.31. (3년)	아름다운정릉1동 사람들협동조합 (조합장 이건평)	센터장 1

<시설현황>

구 분	연면적	명 칭	운영내용
계	359.25㎡		세대통합형 어울림 공간 「주민커뮤니티 센터」
지상1층	125.72㎡	어르신 사랑방	· 정릉1동경로당 - 어르신 여가생활공간 (제외)
지상2층	135.08㎡	주민복합문화공간	· 건강 측정, 인터넷, 여가문화교실, 대관, 카페테리아 운영 등
지상3층	98.45㎡	강당 및 소규모프로그램실	주민 여가프로그램실, 소규모프로그램실 운영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민간 위탁 사무 내용 중 제1호와 제6호⁴⁾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와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는 어르신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 세대간 통합을 도모하고 세대 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간으로써,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성과 다기능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사무

-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조례」 제7조⁵⁾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사무의 재위탁 추진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23.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128호)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남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의 권리보장을 위한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위 치 : 성북구 종암로 18 거산프라자 (3,4층)

- 규 모 : 596.18㎡ (약 180평)
- 인 원 : 13인 (센터장 1, 직원 12)
-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 재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 위탁사무의 범위 :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 전반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전문치료 및 문화여가수업을 통한 개별적 기능향상 지원
 -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 시설관리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 함)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⁶⁾에 따라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3.12.31.자로 “교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을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5년간(2024. 1. 1. ~ 2028. 12. 31.)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임. 위탁대상 운영현황 다음과 같음.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현황〉

소재지	면적(㎡)	연간사업비	위탁기간	운영주체	교육인원	운영조직
성북구 종암로 18 거산프라자(3.4층)	596.18㎡	· 합계 7억 5,744만원 · 운영비 - 6억 384만원 - 시비 5억 300만원 - 구비 1억 84만원 · 임대료 - 1억 5,360만원	2021.1~ 2023.12.31. (3년)	(사)서울장애인 부모연대	30명	12명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는 점에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으로의 위탁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위탁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2022년도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 지침⁷⁾이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된 사항을 따른 것이며,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도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 한 바,⁸⁾있음.

7) 2022년도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 지침 위탁기간 변경

구분	2021	2022
센터운영 위탁	2) 위탁계약의 체결 ○위탁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관의 장이(생략)	2) 위탁계약의 체결 ○위탁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관의 장이(생략)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규정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사무의 재위탁 추진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재계약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5.11.]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23.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129호)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남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 및 방과후“놀이”와 “쉽”을 통한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적 돌봄시설로서 시립 거점형키움센터를 포함하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길음소리마을센터 내 성북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신규설치함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2호점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삼양로9길 14-7 길음소리마을센터 2~3층

- 규 모 : 196.1㎡
- 인 원 : 30명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탁기관으로 가능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위탁사무의 범위 :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관리
 -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한 사업

다.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서울특별시 성북구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우리동네키움센터 12호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우리동네키움센터 12호점이 2023년 10월 이후 신규 설치 예정임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위탁시설 현황 및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음.

< 대상시설 >

유형	위치	규 모	정 원 (명)	종사자	개소시기 (예정)	소유자	비고
일반형	삼양로9길 14-7, 길음소리마을센터2~3층 (길음1동)	196.1㎡	30명	3명	‘23.10. (예정)	서울 특별시	신규 설치

※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제1차 공간확정 심의 결과 선정 통보(市→區, 2023.4.4.)

<우리동네 키움센터 12호점 설치비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시설비 합 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현판설치비	설계비	소요예산
	소 계	국	시	국	시	시	국·시·구
208,536	165,536	22,500	143,036	30,000	3,000	10,000	운영비: 18,600 인건비: 141,024

다. 법적근거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9)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온종일 돌봄 조례”라 함) 제11조제1항10)에 구청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키움센

9)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¹¹⁾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키움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되고, 현재 성북구에 설치된 키움센터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¹²⁾,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및 제10조제2항¹³⁾ 규정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 사료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1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6. (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19. 김육영 의원 외 9명 발의(의안번호 137호)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6. 8.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육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와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을 신설하여 건강도시로서의 정보·기술의 교류 등의 활동이 필요하여 제안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안 제5조)
-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품 배포 및 사업 공헌에 따른 표창(안 제6조)
-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상호 협력(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5. 19. ~ 2023. 05. 24.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전부개정안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 도시로서의 정보·기술 교류 등의 활동을 위한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5조제3항 신설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함.
-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은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강도시 사업 공헌자에 대한 표창 규정을 마련함.
- 안 제8조는 국가·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및 기술 교류, 홍보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사항을 신설함.
- 그 밖에 개정 사항은 조례 제정 이후 2019. 3. 7. 일부개정으로 삭제된 제8조부터 14조까지 ‘조’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

다.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안은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고,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